제 1833 호
1994. 7. 1.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장 이 원 종
편집인 : 공 보 관 김 우 석
전 화 : 731-6111~3
인 쇄 : 한국컴퓨터산업(인쇄)주식회사
전 화 : 273-8111~3

시 보

차 례

◉ 규 칙

제 2623 호 서울특별시하수처리사업소직제규칙개정규칙 ····· 2

제 2624 호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····· 5

공											
람											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"서로서로 고통분담 고루고루 행복분담"

2040

규 칙

서울특별시하수처리사업소직제규칙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1994. 7. 1

서울특별시장 이원종 ㊞

◉서울특별시규칙제2623호

서울특별시하수처리사업소직제규칙 개정규칙

서울특별시하수처리사업소직제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서울특별시하수처리사업소직제규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하수처리사업소(이하 "사업소"라 한다)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하부조직) ①사업소에 관리과·수질분석과·수처리과 및 오니처리과를 두며,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, 수질분석과장은 지방화공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, 수처리과장은 지방토목사무관·지방기계사무관 또는 지방전기사무관으로, 오니처리과장은 지방토목사무관·지방기계사무관·지방전기사무관·지방화공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.

②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문서·관인·보안·인사 및 청사관리
2. 기획·예산·회계 및 물품관리
3. 기타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

③수질분석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하수·오니(분뇨·정화조·탈취설비), 처리시설 실험분석 및 시스템운영 분석·연구
2. 하수처리 공법연구 및 기술개발
3. 각종 통계발간 및 홍보

④수처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하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
2. 처리구역별 차집관거 유지관리
3. 화재 및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

⑤오니처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오니처리시설(탈수시설 포함)의 운영 및 유지관리
2. 자가용 전기공작물 운영 및 유지관리
3. 분뇨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
4. 정화조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

제3조(계의 설치 및 사무분장) ①관리과에 서무계와 경리계를 두며, 각 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.

②수질분석과에 수질분석계와 오니분석계를 두며, 각 계장은 지방화공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로 보한다.

③수처리과에 수처리1계·수처리2계 및 시설계를 두며, 수처리1계장과 시설계장은 지방토목주사·지방기계주사 또는 지방전기주사로, 수처리2계장은 지방기계주사 또는 지방전기주사로 보한다.

④중랑하수처리사업소의 오니처리과에 처리1계·처리2계·위생처리1계 및 위생처리2계를 두며, 처리1계장은 지방토목주사·지방기계주사 또는 지방전기주사로, 처리2계장 및 위생처리1계장은 지방기계주사·지방전기주사 또는 지방화공주사로, 위생처리2계장은 지방화공주사 또는 지방보건주사로 보한다.

⑤탄천하수처리사업소의 오니처리과에 처리1계와 처리2계를 두며, 처리1계장은 지방토목주사·지방기계주사 또는 지방전기주사로, 처리2계장은 지방기계주사·지방전기주사 또는 지방화공주사로 보한다.

⑥가양 및 난지하수처리사업소의 오니처리과에 처리계와 위생처리계를 두며, 처

리계장은 지방토목주사·지방기계주사·지방전기주사 또는 지방화공주사로, 위생처리계장은 지방화공주사 또는 지방보건주사로 보한다.

⑦사업소의 계별 분장사무는 별표와 같다.

제4조(차집관거 관리대상) 사업소의 차집관거 관리대상은 처리구역별 한강변 차집관거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〈별 표〉

하수처리사업소 사무분장표(제3조제7항 관련)

과 명	계 명	분 장 사 무
관 리 과	서 무 계	1. 문서·인사·보안·관인관수 2. 기획·예산에 관한 사항 3. 복무·급여 및 직원후생 4. 운영요원의 교육훈련계획 수립 5. 청사·관사운영 6.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운영 7. 행사에 관한 사항 8. 기타 다른 과·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
	경 리 계	1. 예산지출의 총괄 및 결산 2. 사업의 원가계산 및 경영분석 3. 사업의 세입세출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4. 공사·제조 및 물품의 구매조달 5. 물품관리 및 재산관리
수질분석과	수 질 분 석 계	1. 하수처리 수질분석 및 시스템 운영분석 2. 실험장비의 구입 및 유지관리 3. 염소투입동 유지관리 4. 중앙감시반 운영 및 유지관리 5. 하수처리 공법연구 및 기술개발 6. 각종 통계발간 및 홍보 7. 기타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
	오 니 분 석 계	1. 오니(분뇨, 정화조 포함) 및 탈취설비 실험분석·시스템 운영분석 2. 실험분석 시약 및 초자류의 구입관리 3. 오니케익의 재활용방안 연구 4. 기타 오니 관련 분석에 관한 사항

2012

과 명	계 명	분 장 사 무
수 처 리 과	수 처 리 1 계	1. 1차처리시설(유입수문·분배조·침사지·생하수펌프장 최초침전지)의 운영 및 유지관리 2. 1차처리시설의 기전설비 보수개량 및 유지관리 3. 처리시설의 탈취설비운영 및 유지관리 4. 화재 및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5. 기타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
	수 처 리 2 계	1. 2차처리시설(포기조·최종침전지·방류펌프장)의 운영 및 유지관리 2. 2차처리시설의 기전설비(변전실 포함) 보수개량 및 유지관리
	시 설 계	1. 하수처리시설(토목 시설물)의 보수개량 및 유지관리 2. 한강변 차집관거 유지관리 3. 사업소내 건물(관사 포함), 구조물, 수도시설, 도로의 보수 및 유지관리
오 니 처 리 과	처 리 1 계 (중랑·탄천하수처리사업소에 한함)	1. 오니처리시설(농축조·소화조·소화가스, 발전기·보일러)의 운영 및 유지관리 2. 자가용 전기공작물의 운영 및 유지관리 3. 오니처리시설, 탈취상의 탈취설비운영 및 유지관리 4. 기타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
	처 리 2 계 (중랑·탄천하수처리사업소에 한함)	1. 탈수시설(약품투입시설·탈수시설)의 운영 및 유지관리 2. 탈수시설의 탈취설비 운영·유지관리 3. 발생 폐기물 처리
	위생처리1계 (중랑 하수처리사업소에 한함)	1. 분뇨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2. 분뇨처리시설의 탈취설비운영 및 유지관리 3. 분뇨 부산물 관리 및 판매 4. 기타 분뇨처리에 관한 사항
	위생처리2계 (중랑 하수처리사업소에 한함)	1. 정화조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2. 정화조처리시설의 탈취설비운영 및 유지관리 3. 정화조 부산물관리 및 판매 4. 기타 정화조오니 처리에 관한 사항
	처 리 계 (가양·난지하수처리사업소에 한함)	1. 오니처리시설(농축조·소화조·소화가스, 발전기·보일러)의 운영 및 유지관리 2. 자가용 전기공작물의 운영 및 유지관리 3. 오니처리시설, 탈취상의 탈취설비운영 및 유지관리 4. 탈수시설(약품투입시설·탈수시설)의 운영 및 유지관리 5. 탈수시설의 탈취설비 운영·유지관리 6. 발생 폐기물 처리 7. 기타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

2043

과 명	계 명	분 장 사 무
	위생처리계 (가양·난지 하수처리사업소에 한함)	1. 정화조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2. 정화조처리시설의 탈취설비운영 및 유지관리 3. 정화조 부산물 관리 및 운영 4. 기타 정화조오니 처리에 관한 사항

〈개정이유 및 주요골자〉

1. 개정이유

가양·난지하수처리장에 2차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함에 따라 하부조직을 보강하여 원활한 하수처리장 운영을 도모코자 함.

2. 주요골자

○하부조직 보강

—과 신설 : 4과(관리과, 수질분석과, 수처리과, 오니처리과)[안 제2조]

—계조직 보강 : 5계→9계 [안 제3조]

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1994. 7. 1

서울특별시장 이원종 ㊞

◉서울특별시규칙제2624호

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 개정규칙

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(별표 2—30) 하수처리사업소지방공무원 정원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중랑하수처리사업소

직 급	정 원	정 원 내 용
4 급	1	공업·시설·환경 또는 보건직 1
5 급	4	행정직 1, 기계·전기 또는 토목직 1, 기계·전기·화공·토목 또는 보건직 1, 화공 또는 환경직 1
6 급	11	행정직 2, 화공 또는 환경직 2, 기계·전기 또는 화공직 2, 기계·전기 또는 토목직 3, 기계 또는 전기직 1, 화공 또는 보건직 1
7 급	23	행정직 4, 기계직 6, 전기직 3, 화공직 5, 토목직 3, 건축직 1, 기계 또는 전기직 1
8 급	19	행정직 4, 기계직 5, 전기직 4, 화공직 3, 토목직 2, 환경직 1
9 급	8	행정직 1, 기계직 2, 전기직 2, 화공직 1, 토목직 1, 보건직 1
별정직	6	7급상당 5 : 영양사 1, 공해측정사 1, 열관리기사 1, 고압가스관리기사 1, 위험물처리기사 1 8급상당 1 : 공해측정기사 1
기능직	317	6등급 23 : 기계장 2, 화공원 1, 기계 또는 전기장 20 7등급 41 : 기계장 3, 기계 또는 전기장 38 8등급 57 : 전기원 1, 기계원 2, 화공원 1, 운전원 1, 기계 또는 전기원 47, 위생원 1(사역1), 조무원 3(조무 2, 집배 1), 방호원 1

직 급	정 원	정 원 내 용
		9등급 63 : 전기원 7, 기계원 32, 운전원 1, 기계 또는 전기원 5, 농림원 1(원예 1), 위생원 5(사역 5), 사무보조원 1(타자 1), 조무원 6(조무 6), 방호원 5 10등급 133 : 전기원 6, 기계원 63, 운전원 6, 기계 또는 전기원 10, 위생원 14(사역 14), 사무보조원 2(타자 2), 조무원 20(조무 20), 방호원 12
계	389	

나. 탄천하수처리사업소

직 급	정 원	정 원 내 용
4 급	1	공업·시설·환경 또는 보건직 1
5 급	4	행정직 1, 기계·전기 또는 토목직 1, 기계·전기·화공·토목 또는 보건직 1, 화공 또는 환경직 1
6 급	9	행정직 2, 화공 또는 환경직 2, 기계·전기 또는 화공직 1, 기계·전기 또는 토목직 3, 기계 또는 전기직 1
7 급	13	행정직, 3, 기계직 3, 전기직 2, 화공직 3, 토목직 2
8 급	13	행정직 3, 기계직 2, 전기직 3, 화공직 2, 토목직 2, 환경직 1
9 급	5	행정직 1, 기계직 1, 전기직 1, 화공직 1, 보건직 1
별정직	5	7급상당 3 : 영양사 1, 고압가스관리사 1, 위험물처리기사 1 8급상당 2 : 공해측정기사 1, 열관리기사 1
기능직	124	6등급 19 : 기계 또는 전기장 19 7등급 24 : 기계 또는 전기장 24 8등급 27 : 기계 1, 기계 또는 전기원 24, 조무원 1(조무 1), 방호원 1 9등급 24 : 전기원 3, 기계원 9, 운전원 1, 위생원 3(사역 3), 사무보조원 1(타자 1), 조무원 6(조무 5, 집배 1), 방호원 1 10등급 30 : 전기원 5, 기계원 7, 운전원 3, 농림원 1(원예 1), 위생원 3(사역 3), 사무보조원 2(타자 2), 조무원 6(조무 6), 방호원 3
계	174	

다. 가양하수처리사업소

직 급	정 원	정 원 내 용
4 급	1	공업·시설 또는 환경직 1
5 급	4	행정직 1, 기계·전기 또는 토목직 1, 기계·전기·화공·토목 또는 보건직 1, 화공 또는 환경직 1
6 급	9	행정직 2, 화공 또는 환경직 2, 기계 또는 전기직 1, 기계·전기 또는 토목직 2, 기계·전기·화공 또는 토목직 1, 화공 또는 보건직 1
7 급	10	행정직 2, 기계직 1, 전기직 2, 화공직 3, 토목직 2
8 급	11	행정직 3, 기계직 2, 전기직 2, 화공직 1, 토목직 2, 환경직 1
9 급	6	행정직 1, 기계직 1, 전기직 1, 화공직 1, 토목직 1, 보건직 1

직 급	정 원	정 원 내 용
별정직	4	7급상당 3 : 영양사 1, 열관리기사 1, 위험물처리기사 1 8급상당 1 : 공해측정기사 1
기능직	163	6등급 20 : 기계 또는 전기장 20 7등급 20 : 기계 또는 전기장 20 8등급 30 : 기계원 1, 화공원 1, 기계 또는 전기원 27, 조무원 1(조무 1) 9등급 29 : 전기원 6, 기계원 9, 운전원 1, 위생원 3(사역 3), 사무보조원 1 (타자 1), 조무원 6(조무 5, 집배 1), 방호원 3 10등급 64 : 전기원 9, 기계원 24, 운전원 2, 농림원 1(원예 1), 위생원 10 (사역 10), 사무보조원 2(타자 2), 조무원 7(조무 7), 방호원 9
계	208	

라. 난지하수처리사업소

직 급	정 원	정 원 내 용
4 급	1	공업·시설 또는 환경직 1
5 급	4	행정직 1, 기계·전기 또는 토목직 1, 기계·전기·화공·토목 또는 보건직 1, 화공 또는 환경직 1
6 급	9	행정직 2, 화공 또는 환경직 2, 기계 또는 전기직 1, 기계·전기 또는 토목직 2, 기계·전기·화공 또는 토목직 1, 화공 또는 보건직 1
7 급	10	행정직 2, 기계직 2, 전기직 2, 화공직 3, 토목직 1
8 급	10	행정직 3, 기계직 2, 전기직 2, 화공직 1, 토목직 1, 환경직 1
9 급	7	행정직 1, 기계직 2, 전기직 2, 토목직 1, 보건직 1
별정직	4	7급상당 3 : 영양사 1, 열관리기사 1, 위험물처리기사 1 8급상당 1 : 공해측정기사 1
기능직	147	6등급 14 : 기계 또는 전기장 14 7등급 17 : 전기장 1, 기계 또는 전기장 16 8등급 30 : 기계원 1, 화공원 1, 기계 또는 전기원 28 9등급 22 : 전기원 7, 기계원 4, 운전원 2, 위생원 2(사역 2), 사무보조원 1 (타자 1), 조무원 2(조무 1, 집배 1), 방호원 4 10등급 34 : 전기원 5, 기계원 11, 운전원 4, 농림원 1(원예 1), 위생원 4(사역 4), 사무보조원 2(타자 2), 조무원 5(조무 5), 방호원 2
계	162	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〈개정이유 및 주요골자〉

1. 개정이유

가양·난지하수처리장의 2차 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정원조정

2. 주요골자

○ 정원증원 : 27명(4급 2, 5급 6, 6급 이하 11, 별정 5, 기능직 3)

- 중랑 : △24명(△기능직 24)
- 탄천 : △31명(△6급 이하 3, 별정 1, △기능직 29)
- 가양 : 47명(4급 1, 5급 3, 6급 이하 5, 별정 2, 기능직 36)
- 난지 : 35명(4급 1, 5급 3, 6급 이하 9, 별정 2, 기능직 20)

2016